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및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,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3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,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,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2. 19. ~ 3. 10.)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3항제2호 중 “수립·종합”을 “종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대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”을 “대기업집단 현황·주식소유 현황·내부거래 현황·지배구조 현황·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·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공유

제9조의2제4항제6호 중 “지주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”을 “지주회사 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특수관계인”을 “지주회사 관련 특수관계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5항제5호 중 “특수관계인”을 “공시를 통해 인지한 특수관계인”으로, “확인 및 조사의 기획·종합·조정”을 “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·분석”을 “현황·출자 현황·채무보증 현황 및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·운

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
제9조의2제6항제1호 중 “가이드라인의 설정·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”을 “시책 수립 및 심사지침 등의 설정·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호,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 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

4. 특수관계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6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

제9조의2제7항제1호 중 “가이드라인의 설정·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”을 “시책 수립 및 심사지침 등의 설정·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 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

5.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토목(건축)사무관”을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행정사무관·토목(건축)사무관”을 “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2 총계 “483”을 “48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0”을 “48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57”을 “158”로 하고, 행정주사 “121”을 “123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2 총계 “485”를 “4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2”를 “48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64”를 “165”로 하고, 행정주사 “114”를 “116”으로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기업집단국) ①·② (생략)	제9조의2(기업집단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<u>수립·종합</u> 및 조정	2. ----- ----- ----- <u>종합</u> ----- -----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대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</u>	7. <u>대기업집단 현황·주식소유 현황·내부거래 현황·지배구조 현황·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·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</u> -----
<u><신 설></u>	8. <u>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공유</u>
8. ~ 10. (생략)	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④ 지주회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
1. ~ 5. (생략)

6. 지주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지주회사 정보공개 시책 추진

7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⑤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·이행 확인 및 조사의 기획·종합·조정

6.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·분석

7. 대기업집단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·훈련

<신설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지주회사 현황 -----

7. 지주회사 관련 특수관계인-----

⑤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공시를 통해 인지한 특수관계인-----

----- 확인

6. -----
-- 현황·출자 현황·채무보증 현황 및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·운영

7. ----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-----

8.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

⑥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의 설정·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

<신 설>

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

4.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, 출자현황, 채무보증현황 및 지배구조현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·운용

<신 설>

⑥ -----
-----.

1. -----
----- 시책 수립 및 심사지침 등의 설정·운용

2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 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특수관계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<삭 제>

6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

⑦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<u>가이드라인의 설정·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</u> <u><신 설></u> 2. (생략) 3. (생략) 4. <u>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, 출자현황, 채무보증현황 및 지배구조현황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·운용</u> <u><신 설></u> 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 (생략)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·경쟁과·소비자과·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토목(건축)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</u> 보한다. <u>다만, 총괄과장은 부이</u>	<u>기법 개발과 교육훈련</u> ⑦ ----- -----. 1. ----- <u>시책수립 및 심사지침 등의 설정·운용</u> 2. <u>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 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 5. <u>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</u> 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</u> ----- ----- <u>다만, 총괄과장은 부이</u>
---	---

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15조(부산·광주·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 (생략)

② 부산·광주·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·경쟁과·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,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·토목(건축)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7조의2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

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부산·광주·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행정사
무관·시설사무관 -----
-----.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충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
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
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
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<u>483</u>		<u>486</u>		+3
		·	·		·		
		·	·		·		
일	반	직 계	<u>480</u>		<u>483</u>		+3
		·	·		·		
		·	·		·		
행	정	사무관	<u>157</u>		<u>158</u>		+1
		·	·		·		
		·	·		·		
행	정	주사	<u>121</u>		<u>123</u>		+2
		·	·		·		
		·	·		·		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의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5</u>	<u>488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82</u>	<u>485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	<u>164</u>	<u>165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	<u>114</u>	<u>116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